「국제법무」 제10집 제1호, 2018. 5.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통일한국을 대비한 민사절차법의 정비방안*

Improvement of Civil Procedure Law for Unification Korea

장 완 규**
Jang, Wan-Kyu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법제통일 사례
Ⅲ. 남북한 민사절차법의 특징 및 차이점
Ⅳ. 통일의 방식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Ⅴ. 마치며

국문초록

남과 북은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반목하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8.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극한 대치상황 끝에 찾아온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조심스럽게 남북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간의 서로 다른 법제도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향후 남북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하기에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

논문접수일 : 2018. 03. 30.
심사완료일 : 2018. 05. 03.
게재확정일 : 2018. 05. 03.
* 이 글은 필자가 2014. 12. 6. 안암법학회 제59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 법학박사 ·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 분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써 통일 이후의 순조로운 법제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민사절차법의 경우, 서로 다른 법제도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통일법제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법제 연구에 있어서 장래 남북한이 어떠한 방식에 의한 통일을 하게 될지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연방성격의 합의통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절차법 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서로 다른 통일의 방식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남북통일, 법제통일, 민사법, 민사절차법, 연방, 법적 분쟁의 해결

Ⅰ. 들어가며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은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다. 휴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대변되는 남한과, 김씨 일가의 일당독재체제와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북한은 각각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상이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가공동체를 영위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북의 분단은 더욱 더 고착화되었고 남북의 이질화는 점점 심화되었다. 분단의 고착화와 이질성은 근본부터 상이한 여러 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 반목, 전쟁의 공포와 이산의 아픔을 조속히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이다. 최근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후 전세계에 불어 온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힘입어 한반도에도 점차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가 증대되고 과거 반세기의

오해와 반목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적·물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1)]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핵과 핵실험을 두고 북한과의 극한 대립과 군사대치를 하여왔던 상황에서 벗어나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판문점에서 곧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과거 2003년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30대 탈북여성이 북한의 잔류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도 있다.[2)]

이와 같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남과 북의 화해무드의 큰 흐름 속에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조심스럽게 남북통일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서로 다른 법제도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향후 남북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하기에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 분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다.[3)] 이에 우리 정부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통일법제 연구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2009년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으로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중장기적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법제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통일 후를 대비한 사법조직 및 인력의 정비·통합방안, 외국의 사법제도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써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며 이로써 통일 이후의 법제 통합이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민사절차법의 경우, 서로 다른 법제도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통일법제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4)]

그런데 통일법제 연구에 있어서 장래 남북한이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하게

1) 김경욱·김정환, "북한 민사관계법률에 대한 분석과 남한법률과의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 제39호, 안암법학회, 2012년, 109-110면.

2) 2003년 11월 11일자 뉴시스 인터넷 신문기사(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31111024214282)

3) 김경욱·김정환, 전게논문, 110면.

4) 상게논문, 110면.

되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연방성격의 합의통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절차법 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서로 다른 통일 방식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외국의 법제통일 사례를 살펴본 후, 북한 민사절차법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는 한편 남북한 민사절차법의 차이점을 고찰한다. 향후 통일한국을 바라볼 때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러 가지 통일의 방식에 따른 민사절차법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국의 법제통일 사례

1. 서

반세기 넘께 남과 북은 서로 철저하게 단절되어 살아온 만큼 남북한 간의 민사절차 규정은 서로 상이하며, 어떠한 점에서는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남과 북의 민사절차법을 제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제통합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법제통합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통일한국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방식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법제통합의 방식 중 우리가 타산지적으로 삼을만한 좋은 사례로써 ⅰ) 동서독 간의 통일사례(합의에 의한 흡수통일)와 ⅱ) 중국·홍콩 간의 일국양제(一國兩制)형 통합사례를 살펴본다.

2. 통일독일의 경우[5)]

다음과 같이 동서독의 법률통합의 과정은 간단히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박수혁,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법조」 제11권 제530호, 법조협회, 2000, 66-67면의 내용 요약.

첫 번째 단계로, 1989년 10월의 동독의 민주화 혁명 이후 1990년 7월에 발효된 국가조약에 의한 통화동맹의 성립시기로 동독이 스스로 민주화혁명을 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동독헌법 제1조의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규정한 문구도 삭제하였고 광범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통화동맹 성립이후부터 통일조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동서독이 서독 마르크화를 기반통화로 하는 통화동맹을 맺어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였고 또 이러한 통화동맹에 따라서 동독은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게 되었다. 통화동맹 창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서독에서 제시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주의, 사회적 기본질서 등을 동독 측이 대폭 수용함으로써 이 분야의 동서독의 법률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통화동맹 성립시부터 통일조약 발효 이후까지의 시기에 1990년 10월 3일 발효된 통일조약에 의해서 독일통일이 실현되고 법의 동화작업이 본격화된 단계이다. 통일조약상 법의 동화에 관한 일반원칙은 ⅰ) 통일조약 제8조로써 서독의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동독지역에 확장 적용된다. ⅱ) 통일조약 제9조 제1항으로써 구 동독법 가운데 연방기본법상 주법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법이나 연방법, EU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정한 전제하에 주법으로써 계속 적용한다. ⅲ) 통일조약 제9조 제1항으로써 동독법 중 조약 제2부속서에 열거된 것은 동독지역에서 계속 유효하다.

3. 중국-홍콩의 경우

중국과 영국은 홍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1983년 9월 27일 홍콩반환문제에 관한 9가지 원칙을 설명하였는데, 이 9가지 원칙은 一國兩制(일국양제)[6]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괄한 것으로 이후 공동성명의 기초가 되었고,[7] 중국의 기본적인 통일방안은 일

6) 일국양제란 1982년 등소평이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일개국가 양종제도의 준말로써 하나의 국가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7) 법무부,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16면.

국양제를 취한다.

영국과 중국 양국은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홍콩문제에 관한 영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비준절차를 거쳐 1985년 5월 27일 공동성명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1990년 4월 제정 공포하고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8] 이로써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해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라고 선언하는(법 제1조) 한편,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로 중앙정부에 직할되고(법 제12조)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교와 방위를 전담하며(법 제13조·제14조)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등(법 제15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9] 따라서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보기 때문에,[10] 대만의 법질서는 하나의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른 법역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Ⅲ. 남북한 민사절차법의 특징 및 차이점

1. 서

남북한 민사절차법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민사절차법 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점에서 서로 다른가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법제통합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수월하고 또 올바른 통합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북한 민사절차법의 주요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남북한 간의 민사절차법상 어떠한 점에

8)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2., 76면.

9) 법무부,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21면.

10)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 2003. 3, 67면.

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2. 북한 민사절차법의 연혁 및 특징

가. 북한 민사소송법의 연혁

해방 직후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처음부터 일본 의용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던 북한은 1976년 1월 10일 최초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11] 이렇게 제정된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김일성의 교시를 최고법규로서 승인하는 한편, 철저한 직권주의적 소송진행, 검사의 민사재판 감시 및 관여 강화,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재판관여 등을 민사소송법의 주요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 북한으로서도 개혁과 개방이라는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이러한 냉엄한 국제정세와 현실 속에서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개방과 무역제일주의를, 대내관계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북한은 통일 민사소송법전을 제정한 지 18년만인 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호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총 13장, 182조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7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12] 이후 2002년 10월 2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3369호로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2004년, 2005년, 2007년의 수정보충과 2009년 4월의 수정과 12월의 수정보충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13]

---

11) 법원행정처, 「북한의 개정민사소송법」, 1995, 6면.

12) 이춘성, "개정된 북한민사소송법의 분석평가", 「법조」 제44권 제2호, 법조협회, 1995, 236면.

13) 함영주,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민사소송」 제1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282면.

나. 북한 민사소송법의 특징

1) 직권주의의 채택 및 제한된 범위에서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의 인정

1976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를 부르주아 독재실현의 도구인 동시에 약육강식의 수단이라고 매도하면서 철저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14][15] 199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조에서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법문과, 제25조에서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내용을 미뤄볼 때, 현재는 직권주의의 태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검사의 소송관여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민사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나,[16] 북한에서는 검사가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의 전(全)단계에 걸쳐서 참가하여 감독할 뿐만 아니라 판결과 판정의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하여 감시한다.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검사가 민사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서 "검사는 국가·사회 및 공민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사의 소제기 권한**). 검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북한에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그리고 그 구현인 노동당의 사법정책이 최고의 기준이 되며, 재판이 이러한 최고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17]

---

14) 정동윤, "북한의 민사소송법", 「북한법률행정논집」 제7권, 1989, 205면.

15) 북한의 민사소송에서 직권주의의 채택은 "재판소로 하여금 사건해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계급투쟁의 무기인 재판소의 혁명적 기능을 끊임없이 높여 민사재판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근본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 김정금·리황, 「민사소송법(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1-12면.

16)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일정한 가사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7)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389면.

둘째, **검사의 소송심리 관여** 측면에서,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하며(제104조),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제105조).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하고(제122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 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고칠 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제125조). 이와 같이 검사에게 소송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송심리과정에서의 김일성의 교시,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 및 준법성 감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18]

셋째, **검사의 상소, 비상상소, 재심관여 권한 등**에 관하여 검사도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상급재판소에 제1심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항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39조), 제2심 재판에서도 역시 검사가 소송에 참가하며 심리종결 전에는 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을 내린다(제147조, 제148조). 또한 중앙검찰소 소장은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157조, 제158조), 비상상소사건심리에도 참가하고(제164조). 비상상소사건심리에 있어서 심리종결 전에 중앙검찰소 소장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5조). 한편 재심도 비상상소와 마찬가지로 중앙검찰소 소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제168조), 중앙검찰소 검사는 재심에 참가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제173조).

북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상소제기 및 상소심 심리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하급재판소에 대한 상급재판소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를 통해서 김일성의 교시와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 그리고 법률의 적용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19]

---

18) 김홍규, "북한의 민사소송법", 「인권과 정의」 제231호, 1995. 11., 79면.
19) 김정금·리황, 전게서, 145-146면.

끝으로 **재판집행과정에의 관여** 측면에서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75조),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고 하여(제176조 전문) 검사에게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한 집행문 발급신청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권능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검찰기관은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노동자와 농민의 주권옹호, 협동단체재산과 인민의 재산·생명을 모든 침해로부터 법적으로 보장하고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20]

3) 2심의 심급제도

우리나라의 3심제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라는 3등급의 재판소로 구성되고(재판소구성법 제3조) 심급은 2심제로 되어 있다(제155조).[21] 소송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를 특별히 '항의'라고 하여 소송당사자 등의 불복신청인 '상소'와 구별하고 있다.[22] 인민재판소는 관할지역 안의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하고, 도(직할시)재판소는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사사건과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 이후 2009년에 인민재판소로 불려지는 재판소의 명칭을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로 명칭을 구체화하였다.[24]

북한 민사소송법상 상소심은 제2심이자 최종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한

20) 김홍규, 전게논문, 81면.

21) **북한 민사소송법 제155조**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22) 북한에서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이 불복대상에 따라 항소, 항고, 상고로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불복주체에 따라 상소, 항의로 구별하고 있다(북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제139조 참조).

23) 함영주,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민사소송」 제1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301면.

24) 상게논문, 302면.

편, 제2심은 사후심[25]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는 점(제149조)에서 일부 속심[26]적 성격을 갖는다(제한적 속심).[27]

북한 민사소송법상의 상소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급재판소로 하여금 하급재판소들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적 요구에 맞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중앙집권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다.

4) 참심제도(인민의 재판관여)

북한에서의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참심제(參審制)[28]에 의하며(재판소구성법 제12조),[29] 판사인 재판장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다(재판소구성법 제9조).[30] 따라서 '인민참심원'은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 재판부의 구성원이며,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장인 판사와 함께 유무죄평결 및 양형, 법률해석 등에 관여한다(민사소송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이 점은 참심제나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와 다르다.

이처럼 일반대중을 민사소송에 관여시키는 것은 북한에서는 민사소송을 양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단순한 절차로 인식하지 않고, 민사재판은 「낡은 사상,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의 발현인 위법현상들과 비로동계급적 요소들에 대한 재판적인 통제와 제재로써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람과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31]

---

25) 사후심(事後審)이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1095면.

26) 속심(續審)이란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에 기초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일정한 경우에 새로운 심리를 통하여 제1심의 소송자료와 다른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1096면.

27) 강현중, "북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제4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45면.

28) 참심제란 선거나 추첨에 의해 국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合議體)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29)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2조**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30)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9조**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31) 정동윤, "북한민사소송법의 특색과 민사절차의 개요", 「북한법률행정논집」 제9권, 1992, 22면.

5) 김일성교시의 최고규범성

북한에서 민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노동당의 사법정책"이 최고의 기준이 되며, 실정법은 이들 규범의 하위에 위치할 뿐이어서 실정법이 차지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32]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가 민사재판에 관여하는 이유도 재판이 위의 최고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에 몇 번이고 또 아무런 기간의 제한없이 비상상소가 허용되는 것도 위 기준에 어긋나는 재판의 효력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33] 이것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3. 남북한 민사절차법의 차이점

북한 민사소송법 총 182개 조문을 대상으로 우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요한 내용상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북한 민사소송법 제12조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도 민사재판에서 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절대적 증거력을 인정하여 그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불허함으로써 이에 관해서는 자유심증주의를 배제하고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34]

2) 북한 민사소송법 제27조에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재판소는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32) 상게논문, 28면.
33)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389면.
34) 강현중, 전게논문, 15면.

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引入)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할 경우 소송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과는 달리 소송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직접 원고 또는 피고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3) 북한 민사소송법 제28조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소송인들 간에 소송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하여 북한에서는 자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여 소송신탁을 허용하고 있다.[35]

4) 북한 민사소송법 제38조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변론주의 원칙이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제39조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증거제출에 관한 재판소의 요구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아 초래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법 제1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법 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법 제350조) 등의 규정을 통하여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남과 북이 서로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라 평가할 수 있다.[36]

5) 북한 민사소송법 제85조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처분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의 취

35) 상게논문, 19면.

36) 함영주,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민사소송」 제1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305면.

소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판사가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의 포기나 화해의 경우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즉 처분권주의의 제약이 있다.

6) 북한 민사소송법 제135조에서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리혼당사자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한 제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점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사와 형사가 혼합된 형태의 소송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 민사소송법의 특징이라 하겠다.

7) 북한 민사소송법 제17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든지, 제178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집행을 한다든지[37] 하는 규정은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서 집행문부여 신청권자는 당사자인 채권자이며, 집행기관이 집행관, 집행법원 그리고 수소법원인 점과는 서로 다르다. 그밖에도 북한의 집행 관련 규정은 제175조에서 제182조까지 8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경우 총 312개 조문으로 부동산집행을 비롯하여 선박 등 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담보권 실행경매, 보전처분 등 모든 규정이 완비되어 있다.

4. 소결

전술한 북한 민사소송법의 특징인 법원의 직권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및 재판감시, 인민의 재판관여와 김일성교시의 최고규범성 등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대원칙의 하나인 사적자치의 내용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당사자주의,

37) 북한에서 금전에 대한 집행은 국가중재기관의 집행문에 기초하여 은행이 직접 행하며, 국가중재기관은 집행문을 직접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보내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불통지를 할 필요도 없이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 함영주, "남북한민사집행법제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연구」 제9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 29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다. 즉 북한에서의 민사소송은 민사재판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담보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폭넓은 사적자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를 제약하는 것이 북한 민사소송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 간의 이념과 이상의 차이는 남북한이 진정한 법제통합을 하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통일의 방식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1. 서

서로 상이한 남과 북의 민사절차법 규정을 올바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법제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하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통일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에 의한 법제통합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식에 따른 남북한 간의 민사절차법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일의 방식

일반적으로 통일의 유형에 대하여는 무력통일과 평화통일, 흡수통일과 합의통일, 급진적 변화에 의한 통일과 점진적·단계적 통일 등 다양한 유형만큼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통일의 유형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어서 통일의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혼재할 수 있다. 즉 무력통일이면서 흡수통일일 수 있고, 평화통일이면서 흡수통일, 합의통일, 또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될 수도 있어 고정된 개념으로써 통일의 유형을 일도양단으로 딱 잘라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국제법상 무력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 의한 무력통일이든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이든 무력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유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도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이 될 수 없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흡수통일은 가능하나,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이나 북한주도의 흡수통일에 있어서 후자의 경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북한으로 병합되어 국가공동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통일의 방식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평화적인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연구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무력통일과 평화통일, 흡수통일과 합의통일이라는 단순히 특정 사건(전쟁, 평화협정 등) 중심의 분류방식 보다는 통일의 속도를 기준으로 ⅰ)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과 ⅱ) 점진적·단계적 변화에 의한 통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이다.[38] 전자의 경우 전술한 동서독 통일의 방식과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식 통합의 방식이 이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로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은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과 점진적·단계적 변화에 의한 통일로 구분하여 남북법제통합을 위한 민사절차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을 대비한 민사절차법 정비방안

여기서 말하는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이란 북한정권의 붕괴에 의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라든지, 동서독 간의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든지,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형 통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하여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상황변화에 의한 통일을 남한이 주도한다면, 주도권을 쥔 남한의 법률이 북한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남한

38) 송인호,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3권, 대한변호사협회, 2013. 5., 25면.

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남한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사이에 서로 대응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남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확장 적용하겠지만, 북한 민사소송법 규정 중 그대로 둘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39]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남한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북한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어 일시에 북한의 민사소송법을 배제하고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랜 기간 북한의 민사소송법 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40] 그러므로 기간규정이나 요건상의 범위 또는 대상유무 등의 절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의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북한 민사소송법의 특징인 법원의 직권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및 재판감시, 인민재판적 성격 등은 사적자치원칙에 기반을 둔 민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송법으로는 아주 부적절하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 또한 8개 조문에 불과한 강제집행 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재산관련 분쟁에 따른 집행단계에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북한에 확장 적용하되 주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경과조치가 필요하다.[41]

한편 남북한이 60년 넘게 분단되어 왔고 독일과 달리 남북한은 전쟁을 치러 남북한 주민들의 이념적·사상적·감정적 대립의 벽이 높으며 급격한 통합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 사회혼란 등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통일을 하되 일정기간 정치적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된다.[42]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중국·홍콩간 일국양제형의 통

39) 박수혁, 전게논문, 72면.
40) 이규창, 전게논문, 72면.
41) 박수혁, 전게논문, 82면.
42) 이규창, 전게논문, 76면.

합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민사와 사법영역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각각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형사와 공법영역의 경우에는 남북통일의 법통합을 이룩하는 1국가 2법제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43] 그러나 1국가 2법제의 형식을 취하더라고 인류 공통의 가치이자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민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만큼 이에 위배되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4. 점진적·단계적 변화에 의한 통일을 대비한 민사절차법 정비방안

점진적·단계적 변화에 의한 통일이란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나 급속한 흡수통일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통일의 양당사자가 1:1의 대등한 지위에서 단계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체제에 입각한 남한과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체제에 입각한 북한이 대등한 지위에서 점진적 단계적 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르러 통일국가를 건설한다고 할 경우,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검토가 유력하다. 그런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수립단계의 3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적 절차에 의하여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먼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서 남과 북의 신뢰 회복을 통한 경제·문화적 교류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남북연합의 단계로서 남북연합헌장을 통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법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연합이 성숙되면 그 다음 단계인 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하여 통일합의서를 체결하여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정치제도, 경제체제, 대외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44]

그런데 통일국가 수립 이전에 북한법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남북한 간의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안은 북한을 완전한 독립정

43) 김상준,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 「통일사법정책연구(2)」, 법원행정처, 2008. 12., 327면.
44) 이규창, 전게논문, 80-85면.

부로 인정하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45]

결국 통일국가 수립 단계에서 남북이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어느 한쪽의 체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통일국가의 기본이념과 원리는 역사적 - 경험적으로 우월성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으므로[46]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일반법으로서 통일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다.

한편 통일국가 수립 이전에는 과거 2000년도에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체결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사분쟁의 경우 남북이 합의한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법제통일의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중재판정에 의한 민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통일국가 수립단계에서 남북한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한 간의 민사분쟁사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여 법적용의 방법에 관하여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7] 이 검토과정에서 북한헌법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모든 법제통합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우리 헌법의 절대적 가치인 인간존엄성, 민주주의 질서, 법치주의 등의 원칙은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

5. 소결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민사절차법을 정비하는 방안으로서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과 점진적·단계적 변화에 의한 통일방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필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급격한 변화에 의한 경우 남한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함은 주지한 바와 같이 당연한 일이며 이로써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북한에도 확대

45) 법무부,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Ⅱ)」, 2007. 1, 378면.
46) 법무부,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Ⅴ)」, 2013. 9, 32-33면.
47) 법무부,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Ⅱ)」, 2007. 1, 380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확대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북한주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거나 기간에 관한 규정, 관할규정,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규정 등 비교적 비본질적인 내용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점진적·단계적 변화에 의한 경우 진정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남북한의 민사소송법을 각기 적용하거나 또는 중재를 통한 사건해결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국가를 위한 합의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통일국가의 기본이념과 원리는 역사적 - 경험적으로 우월성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의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은 마땅히 탈각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간존엄성과 법치주의를 통일헌법에 꼭 담아내야 한다.

Ⅵ. 마치며

현재 통일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여러 연구회나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운영되고 있다. 큰 틀에서 통일이후의 법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렴되고 또 정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통일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합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수범자인 남북한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에 순응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에 동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중국·홍콩의 경우처럼 일국양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남한과 사회주의의 북한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사정에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남북법제통합에 활용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각론적인 부분에서 개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 대한 통합의 논의는 미진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곧 “법은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점 때문에 서로 다른 남북한의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 그 통합작업은 까다로운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남북통일을 이루든 아니면 중국의 사례와 같이 일국양제의 방식을 취하는 통일을 이루든 간에 개별법에 대한 법제통합 또는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질서와 법치주의의 수호 등 우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중요한 원칙이나 요소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개별법에 대한 통합논의를 진행할 때 그 작업이 한결 수월하고 용이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법제도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나, 북한법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한 자료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좀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위해선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 2004.

김정금·리황, 「민사소송법(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류영옥, 「북한학 개론」, 1997.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법무부,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Ⅱ)」, 2007. 1.

법무부,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Ⅴ)」, 2013. 9.

법무부, 「중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 2009.

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 2007.

_____,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_____,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1995.

_____,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 2003.

_____,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2004.

_____,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2005.

_____,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6)」, 2007.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_____, 「북한법제개요-법제자료 제157집-」, 1991.
북한연구소, 「북한의 민사소송법개요」, 1991.
_____, 「북한의 재판제도」, 1991.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1997.
이계만, 「북한의 신사법제도론」, 199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2012.
임성권, 「남북한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 2007.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제3판, 2009.
정경모·최달곤 책임 편집, 「북한법령집」, 제1권, 1990.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1998.
최종고, 「북한법」, 2001.

강현중, "북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제4권, 2001.
김상준,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 「통일사법정책연구(2)」, 법원행정처, 2008. 12.
김홍규, "북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과 인민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1992.
_____, "북한 민사소송법의 회고와 전망",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 1995.
_____, "북한의 민사소송법", 「인권과 정의」, 제231호, 1995.
류승훈, "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시스템", 「평화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박수혁,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법조」 제11권 제530호, 법조협회, 2000.
박정원, "북한 김일성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송인호,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3권, 대한변호사협회, 2013. 5.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2.
이규호, "북한민사소송법과 남한민사소송법안의 비교·분석", 「연세법학연구」, 제

7집 제1권, 2000.
이춘성, “개정된 북한 민사소송법의 분석평가”, 「법조」, 제44권 제2호, 1995.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 2005.
정동윤,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 2005.
_____, “북한민사소송법의 특색과 소송절차의 개요”,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1992.
_____, “북한의 민사소송법”,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1989.
_____, “북한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특색”,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1990.
표호건, “현행 북한의 민사소송제도”, 「인권과 정의」, 제243호, 1996.
함영주, “북한 민사소송법과 중국 민사소송법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함영주, “남북한민사집행법제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연구」 제9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
함영주,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민사소송」 제1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Abstract]

Improvement of Civil Procedure Law for Unification Korea

Jang, Wan-Kyu
Professor, Yoin-In Songdam College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suffering from conflicting and conflicting divisions in a relationship that has been disconnected for over half a century.

The mood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at has come at the end of the

recent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being created. This is important in that it took a step forward as a first step toward careful reunification.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o draw a picture of unified Korea that may be in the atmosphere of this thaw.

However, it is clear that if we do not recognize the different legal system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it will be a big obstacle to futur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o prepare for the upcoming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and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laws that form the basis of the social system.

Therefore, it is very clear tha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preceded and this will enable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In particular, the Civil Procedure Act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of the study of the Unification Law in that it is used as the sole means of solving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living in different legal systems.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two Koreas will unify under the unified law system in the future. As in Germany, unific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absorption unification. However, since it is possible to achieve unification of the unity of the federal character,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different ways of unification and to carry out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ivil procedure law system.

Key words : Inter-Korean Unification, Legal Unification, Civil Law, Civil Procedure Law, Federal, Settlement of Legal Dispute